공 개

의안번호	제 57 호
보 고 연 월 일	2021. 12. 8. (제 22 차)

보고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개정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1. 12. 8.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21. 10. 15. 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新리스 기준서(K-IFRS 1116 '리스', '19년 시행)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때,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최초 인식

○ 이때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자산과 부채가 한세트로 동시에 생겨서, 가산할·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리스사용권자산·리스부채, 충당부채유형자산·복구충당부채 두가지임

**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는 경우 상존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최초인식 예외적용 축소 (제1012호 문단 15, 24)**

○ **(현행)** ❶사업결합(예: 합병)이 아니고, ❷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으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가능

○ **(개정)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제1012호 문단 15·24)**에서 **❶, ❷ 요건**에 더하여 **요건 ❸을 추가**(→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한다는 원칙 下에 예외적용 범위를 축소)

- 이에 따라, **동일 금액**으로 가산할·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의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

※ **(개정 이유)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 下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 범위 축소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K-IFRS 1012 문단15 · 24)>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자산이나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요건 ❶)	사업결합이 **아님**	
(요건 ❷)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요건 ❸)	-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음**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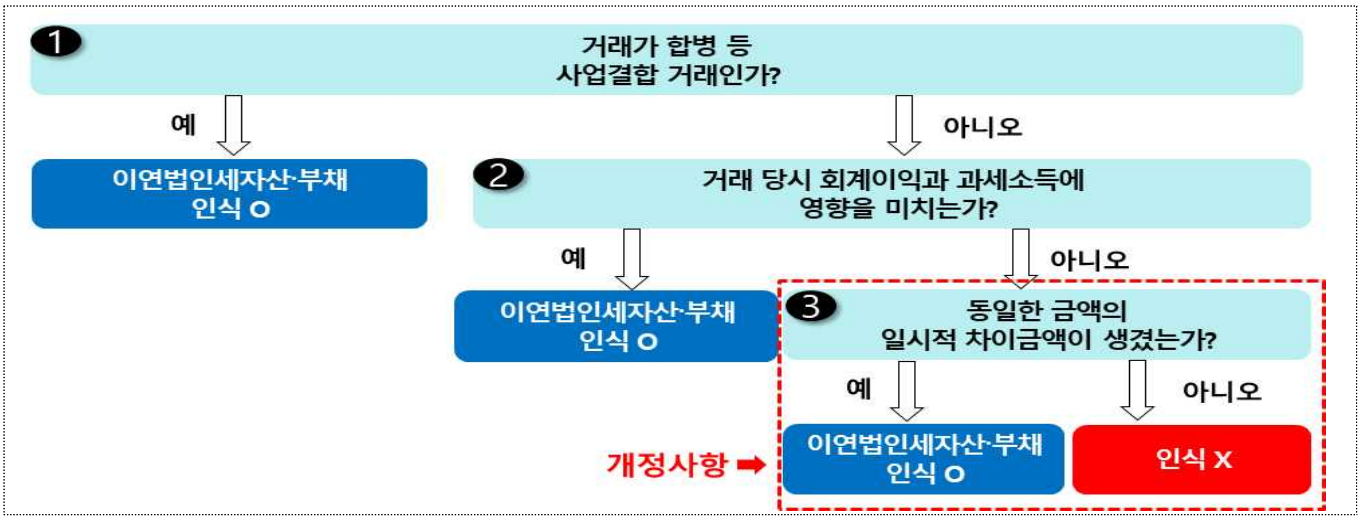

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

□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생긴 거래**는 **거래를 최초 인식한 날**에 **개정 내용**을 적용

○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시작일**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며,

* 이미 존재하는 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② 사후처리 관련 부채와 대응하는 자산

○ 최초 적용 누적 효과는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에 반영

▣ [참고1] 개정내용을 적용할 경우 회계처리 예시

1. 사후처리 관련 부채와 대응하는 자산

□ **개별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복구충당부채(100)를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100)에 가산한 경우**

ㅇ 복구충당부채는 복구비용을 지출할 때 세무상 공제되며, 유형자산 취득금액은 세무상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가정. 즉, 세무기준액은 '0', 적용세율 20%

(1) 복구 의무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100		**(대)** 복구충당부채	100	

(2) 개정내용 적용: (자산·부채가 동시에 같은 금액이 인식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차) 이연법인세자산	**20***		(대) 법인세비용	20	
(차) 법인세비용	20		**(대) 이연법인세부채**	**20***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상계 조건(K-IFRS 1012.74)을 충족하면 상계

2.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 **건물을 임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100)와 사용권자산(100)(리스부채의 최초측정금액)을 인식한 경우**

ㅇ 사용권자산은 세무상 공제받지 못하며, 리스부채는 리스기간에 걸쳐 세무상 공제된다고 가정. 즉, 세무기준액은 '0', 적용세율 20%

(1) 리스 회계처리

(차) 사용권자산	100		**(대)** 리스부채	100	

(2) 개정내용 적용: (자산·부채가 동시에 같은 금액이 인식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차) 이연법인세자산	**20***		(대) 법인세비용	20	
(차) 법인세비용	20		**(대) 이연법인세부채**	**20***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상계 조건(K-IFRS 1012.74)을 충족하면 상계

▣ [참고2] 리스 회계처리 예시(개정안 사례 8)

- 건물을 5년간 리스하여 사용할 계획 (적용세율: 20%)
- 매년 리스료: 100원, 연말 지급
-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5%
- 최초 인식시점 리스부채 현재가치: 435원
- 리스개시일 선급리스료: 15원
- 리스개설직접원가: 5원
- 최초 인식시점 사용권자산 장부금액: 455원(435원 + 15원 + 5원).

□ 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지급할 때 세무상 비용처리가 인정

구분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선급리스료,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부채 상응 사용권자산
(요건 ❶)	사업결합 거래가 아님	○	○
(요건 ❷)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요건 ❸)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음	○	×
☞ 이연법인세 인식 예외규정 적용 여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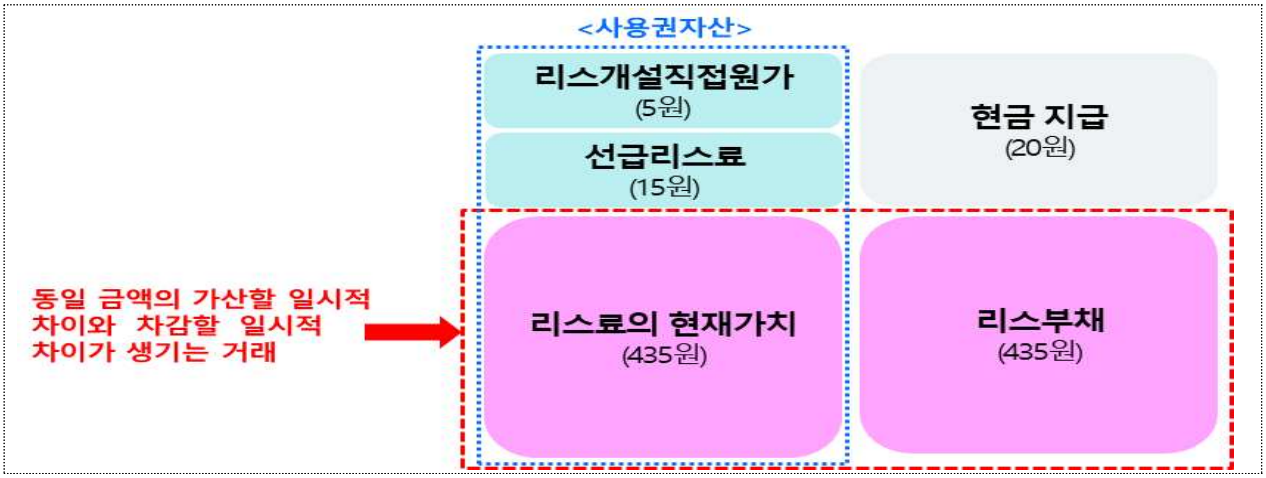

○ **(이연법인세 요약)** 사례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최초 인식할 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장부금액	세무기준액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사용권자산				
선급리스료	15	-	(15)	(3)
리스개설직접원가	5	-	(5)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435**	**-**	**(435)**	**(87)**
■ 리스부채	**435**	**-**	**435**	**87**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도록 명시하여 **회계처리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확보

□ 복구충당부채와 유형자산,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최초에 인식**하는 기업*은 **실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자산과 부채의 동시 인식·상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대규모 장치산업, 오염 유발 기업, 건물을 임차하여 사후처리·복구 의무가 있는 기업 등

▣ [참고]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여부

□ 사후처리 의무 관련 충당부채를 별도로 공시한 **7개社 중 4개社**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으나, 1개社는 미인식 (2개社는 파악 불가)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업종	사후처리 의무 관련 부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여부
		계정과목	금액	법인세 주석 상 공시계정	금액	
아시아나항공	항공업	**반납정비충당부채**	1,049,777	충당부채	190,317*	인식
제주항공		**임차기 복구충당부채**	21,654	복구충당부채	5,268	인식
대한항공		**임차기 정비충당부채 등**	259,148	임차기 정비충당부채	62,574	인식
HMM (舊 현대상선)	해운업	**복구충당부채**	1,222	충당부채	6,822*	인식
GS리테일	유통업	**복구충당부채**	12,053	기타	파악 불가**	불확실
신세계		**복구충당부채**	13,250	-	-	미인식
한국전력	송전·배전업	**복구충당부채**	20,365,357	기타	파악 불가**	불확실

* 주석상 복구충당부채 外 다른 충당부채의 금액도 합하여 공시
** 주석상 사후처리의무와 관련된 부채 계정으로 표시하지 않고 '기타'로 표시하여 해당 금액 인식 여부 파악이 어려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2021. 8. 27.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2021. 8. 31. ~ 2021. 9. 29.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2021. 10. 15.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22차 증권선물의위원회 보고(2021.12.1.)

다. 제2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보고(2021.12.3.)

라.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1. 10. 15.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1 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and is publish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4th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사례 개정 ····· 15

IAS 12 '법인세(income tax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 18

다른 기준서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문단 15, 22, 24를 개정하고 문단 22A와 문단 98J~98L을 추가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1)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 또는이나 부채가를 최초로 인식되하는 거래가경우

(가) 사업결합거래가이 아니고,다.

(나)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않는다.

(다)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22 일시적차이는 자산 또는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도 발생할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나 전부가 세무상 공제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자산 혹은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도록 한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1)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19 참조).

(2) 최초_인식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나 또는 자산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비용이나 또는 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59 참조).

(3) 사업결합이 아니며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며,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 거래와인 경우, 문단 15와 24에서 제사한공하는 예외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이연법인세 부채나 또는 자산을 인식하고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정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해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 또는이나 그 아후에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아래의 예 참조). 특히, 관련 자산와의 감가상각됨에 따라 최초에 미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이 향후에 변동하여되어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

22A 사업결합이 아닌 거래의 결과로 자산과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금액을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다. 문단 15와 24에서 제공하는 예외규정은 이러한 일시적차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및 자산을 인식한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생기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사업결합거래가이 아니코다.**

⑵ **거래 당시 회계이익아나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거래~~다.**

⑶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

시행일

…

98J 2021년 X월에 공표한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15, 22, 24를 개정하였고, 문단 22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문단 98K~98L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98K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한다.

98L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도 모두 인식한다.

⑴ 다음 ㈎와 ㈏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⑵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 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개정(2021. 10. 1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사례 개정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8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긋지 않았다.

계산 및 표시의 예시

...

사례 8 - 리스

리스

기업(리스이용자)은 건물을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간 리스료는 100원이고 매년 말에 지급한다. 리스개시일 전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15원을 지급하고(선급리스료) 리스개설직접원가 5원을 지급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435원(100원씩 5회 리스료를 연 5%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함)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을 455원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치(435원),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로 구성된다.

세법

세법에서는 기업이 리스료(리스개시일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함)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허용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입될 경제적 효익은 과세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고 리스부채를 결제할 기간에는 세율 2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한 다음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에 대하여 받을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의 상환에 관련된다고 결론 내린다.[1)]

선급리스료 및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이연법인세

리스이용자는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를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로 인식한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세무기준액은 영(0)인데, 이는 리스이용자가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세무기준액(0)과 각 구성요소 장부금액의 차이 때문에 15원(선급리스료에 관련됨)과 5원(리스개설직접원가에 관련됨)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거래 당시 리스이용자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리스이용자가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했을 때 받은 세무상 공제가 과세소득을 줄임)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대한 예외규정인 문단 15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각각 3원(15원×20%)과 1원(5원×20%)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연법인세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장부금액(435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무기준액도 영(0)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 원가의 장부금액(435원)을 회수할 때에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기업은 리스료에 대하여 받을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에 관련된다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겠지만 최초 인식 후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것이다.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의 장부금액(435원)과 그 세무기준액(0원)의 차이 때문에 리스개시일에 다음과 같은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⑴ 리스자산에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435원

⑵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435원

이 거래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인식에 대한 예외규정인 문단 15와 24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87원(435원×20%)씩 인식한다.

인식된 이연법인세 요약

다음 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포함함)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를 요약한다.

(단위: 원)

	장부금액	세무기준액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리스자산				
선급리스료	15	-	(15)	(3)
리스개설직접원가	5	-	(5)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435	-	(435)	(87)
리스부채	435	-	435	87

IAS 12 문단 22⑵를 적용하여, 리스이용자는 이 사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IAS 12 '법인세'(Income Tax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12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1을 수정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71~BC95와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문단 BC71~BC95와 관련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도입

BC1 IASC는가 IAS 12 '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계'(1979년 7월 공표)'를 대체하기 위해 1996년에 IAS 12 '법인세'를 공표하였을 때에는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포괄적이지는 않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12월에 공표된 '이연법인세: 기초자산의 회수(Deferred Tax : Recovery of Underlying Assets)'에 포함된~~ 이후 IAS 12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을 개발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만을 요약하였다. ~~개별~~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을 두고 ~~고려하였~~다루었다.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2021년 개정)

BC71 2021년 5월에 IASB는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공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IAS 12 문단 15와 24의 인식 예외규정(이하 '인식 예외규정'이라 한다)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 더는 이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BC72 이 개정 내용은 해석위원회의 권고에 대응하여 공표되었다. 해석위원회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리스와 같이 자산과 부채를 인식

하게 하는 거래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 차이로 그러한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기업마다 다르게 되어 재무제표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었다.

BC73 문단 BC74~BC91에서는 단순하게 리스를 예로 사용하여 개정 내용의 근거를 설명한다. 이 설명은 이 개정 내용의 영향을 받는 다른 거래[예: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이하 '사후처리 의무'라 한다)와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의 원가 일부로 인식된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경

일시적차이와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

BC74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이하 '리스자산'이라 한다)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 인식하는 시점에,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는지를 평가한다. 이 평가를 할 때, 세무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에 귀속되는 금액을 식별하여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산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스료를 지급할 때 리스료에 대하여 세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그 세무상 공제가 다음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를 판단한다.

⑴ 리스자산(과 이자비용) - 세무상 공제가 리스에서 생기는 비용(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⑵ 리스부채(와 이자비용) -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와 이자비용의 상환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BC75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는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BC76 IAS 12를 적용하면,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는 기업이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에 귀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에 귀속되는 경우,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그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이는 기업이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고, 리스부채와 관련해서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리스의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는 생기지 않으므로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지만 최초 인식시점 후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

(2)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에 귀속되는 경우,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이는 기업이 리스부채와 관련해서는 그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고,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회수에 대해서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일시적차이는 리스의 최초 인식시점에 생긴다.

BC77 이 개정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는 문단 BC76(2)에 기술된 상황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였다. 기업이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이든 후속적으로 리스기간 내내든) 리스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인식 예외규정의 목적

BC78 IAS 12 문단 22(3)에서는 인식 예외규정의 목적을 설명한다.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인식 예외규정이 없다면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고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정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하할 것이다. 그러므로 IAS 12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인식을 금지한다.

BC79 IASB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보통 동일하고 서로 상계된다(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금액은 같다)고 보았다.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이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연법인세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면 관련되는 리스자산 또는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식 예외규정을 고안할 때 방지하려고 한 결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어떤 거래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인식 예외규정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축소

BC80 문단 BC79에 요약된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BC81 IASB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때, 이 축소된 적용범위의 인식 예외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을 전부 인식할 수는 없거나(문단 BC82~BC87 참조), 각 일시적차이의 측정치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문단 BC88 참조) 서로 다른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인식 불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BC82 IAS 12 문단 24에서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

록 요구한다(이하 '회수 가능성 요건'이라 한다). 회수 가능성 요건 때문에, 때로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금액이 동일함에도,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BC8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IASB는 외부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공개하였을 때,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생길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차액에는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이하 '상한 제안'이라 한다). 이러한 상한 제안을 적용하면,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것이고 회수 가능성 요건을 적용하여 그 범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이다.

BC84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

⑴ 상한 제안은 IAS 12의 원칙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준서에서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⑵ 상한 제안은 적용하기가 복잡하고 힘들 것이다.

BC85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상한 제안을 삭제하였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⑴ 회수 가능성 요건이 적용되어 대응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연법인세부채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⑵ 상한 제안을 삭제하면 개정 목적을 이루면서도 그 적용의 복잡성을 유의적으로 줄일 것이다(BC92⑴ 참조). 특히 상한 제안을 삭제함으로써,

㈎ IASB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각 거래의 최초 인식시점에 회수 가능성 요건을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전부 인식하지는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단순화할 것이다. 개정 내용에

상한 제안이 유지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적차이의 부분을 별도로 추적해야 했을 것이다.

BC86 상한 제안을 삭제하면 거래의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IAS 12 문단 22(2) 참조). 예를 들면,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만, 이와 금액이 동일하고 상계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면 법인세손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IASB는 이 회계처리가 부채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무상 공제에서 효익을 완전하게 얻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기업이 자산을 회수할 때 미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업의 예상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85(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응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연법인세부채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87 더욱이, IASB는 같은 거래에서 생기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미래 소멸을 통하여 회수 가능성 요건을 보통 충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세율의 적용

BC88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측정치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수도 있다. 문단 BC86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1) 이연법인세의 적은 일부에만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복잡할 것이다.

(2) 이러한 상황은 제한된 수의 국가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세율을 적용할 때 생기는 순효과는 보통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밖의 고려사항

리스자산 또는 리스부채에 대한 세무상 공제의 귀속

BC89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적용지침을 IASB가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였다(문단 BC74 참조). IASB는 그러한 적용지침의 예상 효익이 원가보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적용지침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 개정 목적을 이루는 데 불필요하다.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리스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최초 인식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지침은 다른 상황에서 자산 및 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

BC90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처음 측정한다. 리스자산의 최초 측정치에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뿐만 아니라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도 포함된다.

BC91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를 인식하면 문단 BC7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그렇게 생기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적용된다. 또한, 선급리스료나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하면 리스자산과 관련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추가로 생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한 일시적차이에는 IAS 12의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사례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대응하여 IASB는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사례를 포함하였다.

영향 분석

BC92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⑴ 개정 내용은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와 같은 거래의 보고 다양성을 줄이고, 그러한 거래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IAS 12의 일반 원칙과 일치시킬 것이다.

⑵ 개정 공개초안의 적용원가에 대한 우려는 주로 상한 제안의 적용과 관련되었다(문단 BC84⑵ 참조). IASB는 상한 제안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그러한 우려를 대부분 해소하였다.

경과 규정

BC93 IASB는 IAS 8에 따라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에 관련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예상되는 효익과 원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다고 결론 내렸다. 소급 적용하면 오래전에 생겼던 각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했는지를

소급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이러한 경과 규정의 접근법이 개정 목적을 이루면서도 완전 소급법보다 적용하기에 쉽고 원가도 적게 들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접근법은 개정 내용이 IFRS 16의 경과 규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막는다.

BC94 IASB는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 외의 거래(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에도 이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면, 그러한 거래가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해당 거래의 회계처리를 다시 검토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들고 복잡할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다른 거래에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원가가 그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95 문단 BC93에서 설명하는 바와 비슷한 이유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에 관련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다른 기준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개정

문단 39AH를 추가하였다. 부록 B에서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와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시행일

...

39AH 2021년 X월에 공표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부록 B.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B1 기업은 다음의 예외를 적용한다.

...

⑺ 정부대여금(문단 B10～B12)

⑻ 보험계약(문단 B13)

⑼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문단 B14)

…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B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와 24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다음 항목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개정안 영·한 대비표

본문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Amendments to IAS 12 *Income Taxe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Paragraphs 15, 22 and 24 are amended. Paragraphs 22A and 98J – 98L are adde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nd new text is underlined.	문단 15, 22, 24를 개정하고 문단 22A와 문단 98J~98L을 추가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Recognition of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deferred tax assets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A deferred tax liability shall be recognised for all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deferred tax liability arises from: (a) the initial recognition of goodwill; or (b) the initial recognition of an asset or liability in a transaction which: (i) is not a business combination; ~~and~~ (ii)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affects neither accounting profit nor taxable profit (tax loss); ~~and~~.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1)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 ~~또는~~이나 부채가를 최초로 인식되하는 ~~거래~~ 카경우 ㈎ 사업결합 ~~거래~~가이아니고,다. ㈏ 거래 당시 회계이익어나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않는다.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iii)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does not give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	㈐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
Initial recognition of an asset or liability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22 A temporary difference may arise on initial recognition of an asset or liability, for example if part or all of the cost of an asset will not be deductible for tax purposes. The method of accounting for such a temporary difference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that led to the initial recognition of the asset or liability:	22 일시적차이는 자산~~또는~~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도 ~~발생할~~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또는~~나 전부가 세무상 공제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자산~~혹은~~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도록 한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a) in a business combination, an entity recognises any deferred tax liability or asset and this affects the amount of goodwill or bargain purchase gain it recognises (see paragraph 19);	(1)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19 참조).
(b) if the transaction affects either accounting profit or taxable profit, or gives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an entity recognises any deferred tax liability or asset and	(2) 최초_인식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나~~ 또는 자산을 인식하고 이에 따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recognises the resulting deferred tax expense or income in profit or loss (see paragraph 59);	른 이연법인세 비용~~이나~~ 또는 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59 참조).
(c) if the transaction is not a business combination, ~~and~~ affects neither accounting profit nor taxable profit and does not give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an entity would, in the absence of the exemption provided by paragraphs 15 and 24, recognise the resulting deferred tax liability or asset and adjust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or liability by the same amount. Such adjustments would make the financial statements less transparent. Therefore, this Standard does not permit an entity to recognise the resulting deferred tax liability or asset, either on initial recognition or subsequently (see example below). Furthermore, an entity does not recognise subsequent changes in the unrecognised deferred tax liability or asset as the asset is depreciated.	(3) 사업결합이 아니~~며~~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며,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 거래~~의~~인 경우, 문단 15와 24에서 제~~사한~~공하는 예외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이연법인세 부채~~나~~ 또는 자산을 인식하고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정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해~~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또는~~이나 그~~아~~후에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다(아래의 예 참조). 특히, 관련 자산~~의~~이 감가상각됨에 따라 최초에 미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이 향후에 변동~~하여~~되어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	...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22A A transaction that is not a business combination may lead to the initial recognition of an asset and a liability and,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affect neither accounting profit nor taxable profit. For example, at the commencement date of a lease, a lessee typically recognises a lease liability and the corresponding amount as part of the cost of a right-of-use asset. Depending on the applicable tax law,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may arise on initial recognition of the asset and liability in such a transaction. The exemption provided by paragraphs 15 and 24 does not apply to such temporary differences and an entity recognises any resulting deferred tax liability and asset. ...	22A 사업결합이 아닌 거래의 결과로 자산과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금액을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다. 문단 15와 24에서 제공하는 예외규정은 이러한 일시적차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및 자산을 인식한다. …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24 A deferred tax asset shall be recognised for all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to the extent that it is probable that**	**차감할 일시적차이**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_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taxable profit will be available against which the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 can be utilised, unless the deferred tax asset arises from the initial recognition of an asset or liability in a transaction that:	인식한다.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생기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a) is not a business combination; ~~and~~	(1) 사업결합~~거래~~가이 아니고다.
(b)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affects neither accounting profit nor taxable profit (tax loss); and.	(2)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다.
(c)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does not give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3)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	…
Effective date	시행일
…	…
98J *Deferred Tax related to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a Single Transaction*, issued in May 2021, amended paragraphs 15, 22 and 24 and added paragraph 22A.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98K - 98L	98J 2021년 X월에 공표한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15, 22, 24를 개정하였고, 문단 22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문단 98K~98L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98K	An entity shall apply *Deferred Tax related to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a Single Transaction* to transactions that occur on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earliest comparative period presented.	98K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한다.
98L	An entity applying *Deferred Tax related to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a Single Transaction* shall also, at the beginning of the earliest comparative period presented:	98L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도 모두 인식한다.
	(a) recognise a deferred tax asset－to the extent that it is probable that taxable profit will be available against which the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 can be utilised －and a deferred tax liability for all deductible and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associated with:		(1) 다음 ㈎와 ㈏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i) right-of-use assets and lease liabilities; and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ii)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and the corresponding amounts recognised as part of the cost of the related asset; and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b) recognise the cumulative effect of initially applying the amendments as an adjustment to the opening balance of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at that date.	(2)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 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본문

IFRS 1 본문 개정	제1101호 본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개정**
Paragraph 39AH is added. In Appendix B, paragraph B1 is amended and paragraph B14 and its heading are adde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nd new text is underlined.	문단 39AH를 추가하였다. 부록 B에서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와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Effective date	**시행일**
…	…
39AH *Deferred Tax related to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a Single Transaction*, issued in May 2021, amended paragraph B1 and added paragraph B14.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	39AH 2021년 X월에 공표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부록B.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IFRS 1 부록B 개정	제1101호 부록B 개정안
Appendix B *Exceptions to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other IFRSs* *This appendix is an integral part of the IFRS.*	부록 B.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B1 An entity shall apply the following exceptions: ... (g) government loans (paragraphs B10 – B12); ~~and~~ (h) insurance contracts (paragraph B13); and: (i) deferred tax related to leases and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paragraph B14). …	B1 기업은 다음의 예외를 적용한다. ... (7) 정부대여금(문단 B10~B12) (8) 보험계약(문단 B13) (9)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문단 B14) …
Deferred tax related to leases and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B14 Paragraphs 15 and 24 of IAS 12 *Income Taxes* exempt an entity from recognising a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in particular circumstances. Despite this exemption, at the date of transition to IFRSs, a first-time adopter shall recognise a deferred tax asset—to the extent that it is	B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와 24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다음 항목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

IFRS 1 부록B 개정	제1101호 부록B 개정안
probable that taxable profit will be available against which the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 can be utilised—and a deferred tax liability for all deductible and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associated with:	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a) right-of-use assets and lease liabilities; and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b)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and the corresponding amounts recognised as part of the cost of the related asset.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적용사례

IAS 12 적용사례 개정	제1012호 적용사례 개정안
Amendments to Illustrative Examples accompanying IAS 12 *Income Taxe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개정**
These illustrative examples accompany, but are not part of, IAS 12.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mple 8 is added. For ease of reading, new text has not been underlined.	사례 8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긋지 않았다.
Illustrative computations and presentation	**계산 및 표시의 예시**
…	…
Example 8—Leases	**사례 8 - 리스**
Lease	**리스**
An entity (Lessee) enters into a five-year lease of a building. The annual lease payments are CU100 payable at the end of each year.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lease, Lessee makes a lease payment of CU15 (advance lease payment) and pays initial direct costs of CU5. The interest rate implicit in the lease cannot be	기업(리스이용자)은 건물을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간 리스료는 100원이고 매년 말에 지급한다. 리스개시일 전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15원을 지급하고(선급리스료) 리스개설직접원가 5원을 지급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다.

IAS 12 적용사례 개정	제1012호 적용사례 개정안
readily determined. Lessee's incremental borrowing rate is 5% per year. At the commencement date, applying IFRS 16 *Leases*, Lessee recognises a lease liability of CU435 (measured at the present value of the five lease payments of CU100, discounted at the interest rate of 5% per year). Lessee measures the right-of-use asset (lease asset) at CU455, comprising the initial measurement of the lease liability (CU435), the advance lease payment (CU15) and the initial direct costs (CU5).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435원(100원씩 5회 리스료를 연 5%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함)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을 455원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치(435원),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로 구성된다.
Tax law The tax law allows tax deductions for lease payments (including those made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and initial direct costs when an entity makes those payments. Economic benefits that will flow to Lessee when it recovers the carrying amount of the lease asset will be taxable. A tax rate of 20% is expected to apply to the period(s) when Lessee will recover the carrying amount of the lease asset and will settle the lease liability. After considering the applicable tax law, Lessee concludes that the	**세법** 세법에서는 기업이 리스료(리스개시일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함)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허용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입될 경제적 효익은 과세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고 리스부채를 결제할 기간에는 세율 2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한 다음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에 대하여 받을

IAS 12 적용사례 개정	제1012호 적용사례 개정안
tax deductions it will receive for lease payments relate to the repayment of the lease liability.[1] 1 Depending on the applicable tax law, an entity might alternatively conclude that the tax deductions it will receive for lease payments relate to the lease asset, in which case temporary differences would not arise on initial recognition of the lease liability and the related component of the lease asset's cost. Accordingly, the entity would not recognise deferred tax on initial recognition but would do so if and when temporary differences arise after initial recognition.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의 상환에 관련된다고 결론 내린다.[1)] 1)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기업은 리스료에 대하여 받을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에 관련된다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일시적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인식 시점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겠지만 최초 인식 후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것이다.
Deferred tax on the advance lease payment and initial direct costs Lessee recognises the advance lease payment (CU15) and initial direct costs (CU5) as components of the lease asset's cost. The tax base of these components is nil because Lessee already received tax deductions for the advance lease payment and initial direct costs when it made those payme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base (nil) and the carrying amount of each component results in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of CU15 (related to the advance lease payment) and CU5 (related to the initial direct costs).	**선급리스료 및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이연법인세** 리스이용자는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를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로 인식한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세무기준액은 영(0)인데, 이는 리스이용자가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세무기준액(0)과 각 구성요소 장부금액의 차이 때문에 15원(선급리스료에 관련됨)과 5원(리스개설직접원가에 관련됨)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IAS 12 적용사례 개정	제1012호 적용사례 개정안
The exemption from recognising a deferred tax liability in paragraph 15 does not apply because the temporary differences arise from transactions that,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s, affect Lessee's taxable profit (that is, the tax deductions Lessee received when it made the advance lease payment and paid initial direct costs reduced its taxable profit). Accordingly, Lessee recognises a deferred tax liability of CU3 (CU15 × 20%) and CU1 (CU5 × 20%) for the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related to the advance lease payment and initial direct costs, respectively.	거래 당시 리스이용자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리스이용자가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했을 때 받은 세무상 공제가 과세소득을 줄임)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대한 예외규정인 문단 15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각각 3원(15원×20%)과 1원(5원×20%)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Deferred tax on the lease liability and related component of the lease asset's cost At the commencement date, the tax base of the lease liability is nil because Lessee will receive tax deductions equal to the carrying amount of the lease liability (CU435). The tax base of the related component of the lease asset's cost is also nil because Lessee will receive no tax deductions from recovering the carrying amount of that component of the lease asset's cost (CU435).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연법인세**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장부금액(435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무기준액도 영(0)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 원가의 장부금액(435원)을 회수할 때에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IAS 12 적용사례 개정	제1012호 적용사례 개정안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rrying amounts of the lease liability and the related component of the lease asset's cost (CU435) and their tax bases of nil result in the following temporary differences at the commencement date: (a) a taxable temporary difference of CU435 associated with the lease asset; and (b) a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 of CU435 associated with the lease liability. The exemption from recognising a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in paragraphs 15 and 24 does not apply because the transaction gives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Lessee concludes that it is probable that taxable profit will be available against which the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 can be utilised. Accordingly, Lessee recognises a deferred tax asset and a deferred tax liability, each of CU87 (CU435 × 20%), for the deductible and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의 장부금액(435원)과 그 세무기준액(0원)의 차이 때문에 리스개시일에 다음과 같은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1) 리스자산에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435원 (2)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435원 이 거래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인식에 대한 예외규정인 문단 15와 24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87원(435원×20%)씩 인식한다.
Summary of recognised deferred tax The table below summarises the deferred tax that Lessee recognises on initial recognition of the lease	**인식된 이연법인세 요약** 다음 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IAS 12 적용사례 개정	제1012호 적용사례 개정안
(including the advance lease payment and initial direct costs):	포함함)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를 요약한다.

	Carrying amount	Tax base	Deductible (taxable) temporary difference	/Deferred tax asset / (liability)
Lease asset				
advance lease payment	15	—	(15)	(3)
initial direct costs	5	—	(5)	(1)
the amount of the initial measurement of the lease liability	435	—	(435)	(87)
Lease liability	435	—	435	87

(단위: 원)

	장부금액	세무기준액	차감(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리스자산				
선급리스료	15	-	(15)	(3)
리스개설직접원가	5	-	(5)	(1)
리스부채의 최초측정금액	435	-	(435)	(87)
리스부채	435	-	435	87

Applying paragraph 22(b) of IAS 12, Lessee recognises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s illustrated in this example and recognises the resulting deferred tax income or expense in profit or loss.

IAS 12 문단 22⑵를 적용하여, 리스이용자는 이 사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결론도출근거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2 *Income Taxes*	**IAS 12 '법인세(Income Tax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AS 12.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12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Paragraph BC1 is amended with deleted text struck through and new text underlined. Paragraphs BC71 – BC95 and related headings are added. For ease of reading, paragraphs BC71 – BC95 and the related headings have not been underlined.	문단 BC1을 수정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71~BC95와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문단 BC71~BC95와 관련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Introduction	**도입**
BC1 When IAS 12 *Income Taxes* wa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n 1996 to replace the previous IAS 12 *Accounting for Taxes on Income* (issued in July 1979), the Standard was not accompanied by a Basis for Conclusions. This Basis for Conclusions is not comprehensive. It summarises only the considerations of	BC1 IASC는가 IAS 12 '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계'(1979년 7월 공표)'를 대체하기 위해 1996년에 IAS 12 '법인세'를 공표하였을 때에는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포괄적이지는 않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12월에 공표된 '이연법인세: 기초자산의 회수(Deferred Tax : Recovery of Underlying Assets)'에 포함된~~ 이후 IAS 12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을 개발할 때 IASB가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Board) considerations in developing making the amendments to IAS 12 since contained in *Deferred Tax: Recovery of Underlying Assets* issued in December 2010. Individual Board members gave greater weight to some factors than to others. …	고려한 사항만을 요약하였다. 개별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을 두고 고려하였다루었다.
Deferred Tax related to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a Single Transaction (2021 amendments)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2021년 개정)**
BC71 In May 2021 the Board issued *Deferred Tax related to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a Single Transaction*. The amendments narrowed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exemption in paragraphs 15 and 24 of IAS 12 (recognition exemption) so that it no longer applies to transactions that, on initial recognition, give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BC71 2021년 5월에 IASB는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공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IAS 12 문단 15와 24의 인식 예외규정(이하 '인식 예외규정'이라 한다)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 더는 이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BC72 The amendments were issued in response to a recommendation from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BC72 이 개정 내용은 해석위원회의 권고에 대응하여 공표되었다. 해석위원회가 수행한 조사에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Research conducted by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indicated that views differed on whether the recognition exemption applied to transactions, such as leases, that lead to the recognition of an asset and liability. These differing views resulted in entities accounting for deferred tax on such transactions in different ways, reducing comparability between their financial statements.	따르면, 리스와 같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거래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 차이로 그러한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기업마다 다르게 되어 재무제표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었다.
BC73 For simplicity, paragraphs BC74 – BC91 explain the basis for the amendments using leases as an example. The explanation applies equally to other transactions affected by the amendments, such as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decommissioning obligations) and the corresponding amounts recognised as part of the cost of the related asset.	BC73 문단 BC74~BC91에서는 단순하게 리스를 예로 사용하여 개정 내용의 근거를 설명한다. 이 설명은 이 개정 내용의 영향을 받는 다른 거래[예: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이하 '사후처리 의무'라 한다)와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의 원가 일부로 인식된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Background **Temporary differenc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recognition exemption**	**배경** **일시적차이와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BC74 Applying IFRS 16 Leases, an entity recognises a right-of-use asset (lease asset) and a lease liability at the commencement date of a lease. On initial recognition of the lease asset and lease liability, an entity assesses whether temporary differences arise in determining whether to recognise deferred tax. In making this assessment, an entity determines the tax bases of the lease asset and lease liability by identifying the amounts attributable to them for tax purposes. In some jurisdictions, an entity may receive tax deductions for lease payments when it makes such payments. In such situations, the entity determines whether those tax deductions are attributable to:	BC74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이하 '리스자산'이라 한다)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 인식하는 시점에,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는지를 평가한다. 이 평가를 할 때, 세무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에 귀속되는 금액을 식별하여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산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스료를 지급할 때 리스료에 대하여 세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그 세무상 공제가 다음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를 판단한다.
(a) the lease asset (and interest expense)—because the deductions relate to the expenses arising from the lease (that is, depreciation and interest expense); or	(1) 리스자산(과 이자비용) - 세무상 공제가 리스에서 생기는 비용(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b) the lease liability (and interest expense)—because the deductions relate to the repayment of the lease liability and interest expense.	(2) 리스부채(와 이자비용) -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와 이자비용의 상환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BC75 An entity applies judgement in determining whether tax deductions are attributable to the lease asset or lease liability, having considered the applicable tax law.	BC75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는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BC76 Applying IAS 12, temporary differences arise on initial recognition only when the entity determines that tax deductions are attributable to the lease liability because: (a) when tax deductions are attributable to the lease asset, the tax bases of the lease asset and lease liability equal their carrying amounts, reflecting that the entity will receive tax deductions equal to the carrying amount of the lease asset and will receive no tax deductions in respect of the lease liability. Consequently, no temporary differences arise on initial recognition of the lease and the recognition exemption does not apply. Accordingly, the entity does not recognise deferred tax on initial recognition but does so if and when temporary differences arise after initial recognition.	BC76 IAS 12를 적용하면,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는 기업이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에 귀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에 귀속되는 경우,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그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이는 기업이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고, 리스부채와 관련해서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리스의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는 생기지 않으므로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지만 최초 인식시점 후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b) when tax deductions are attributable to the lease liability, the tax bases of the lease asset and lease liability are nil, reflecting that the entity will receive tax deductions in respect of the lease liability equal to its carrying amount and will receive no tax deductions on recovering the carrying amount of the lease asset. Consequently, temporary differences associated with the lease asset and lease liability arise on initial recognition of the lease.	(2)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에 귀속되는 경우,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이는 기업이 리스부채와 관련해서는 그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고,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회수에 대해서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일시적차이는 리스의 최초 인식시점에 생긴다.
BC77 Before the amendments were issued, views differed on whether the recognition exemption applied to temporary differences that arise in the situation described in paragraph BC76(b). If an entity concluded that the recognition exemption applied, it recognised no deferred tax in respect of the lease (either on initial recognition or subsequently throughout the lease term).	BC77 이 개정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는 문단 BC76(2)에 기술된 상황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였다. 기업이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이든 후속적으로 리스기간 내내든) 리스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Purpose of the recognition exemption	**인식 예외규정의 목적**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BC78 Paragraph 22(c) of IAS 12 explains the purpose of the recognition exemption. If temporary differences arise on initial recognition of an asset or liability in a transaction that is not a business combination and affects neither accounting profit nor taxable profit, an entity would, in the absence of the exemption, recognise the resulting deferred tax liability or asset and adjust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or liability by the same amount. Such adjustments would make the financial statements less transparent and IAS 12, therefore, prohibits the recognition of deferred tax in these circumstances.	BC78 IAS 12 문단 22(3)에서는 인식 예외규정의 목적을 설명한다.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인식 예외규정이 없다면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고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정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하할 것이다. 그러므로 IAS 12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인식을 금지한다.
BC79 The Board observed that, when temporary differences arise on initial recognition of a lease asset and lease liability, these temporary differences are often equal and offsetting (that is, the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are of the same amount). If the recognition exemption were not applied, an entity would generally recognise a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of the	BC79 IASB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보통 동일하고 서로 상계된다(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금액은 같다)고 보았다.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이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연법인세부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same amount for these temporary differences. The recognition of a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of the same amount would not require an adjustment to the carrying amount of the related lease asset or lease liability; nor would it have any effect on profit or loss. Thus, the outcome the recognition exemption was designed to prevent would not occur in such situations. The Board,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recognition exemption is not generally needed if on initial recognition a transaction gives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채와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면 관련되는 리스자산 또는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식 예외규정을 고안할 때 방지하려고 한 결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어떤 거래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인식 예외규정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Narrowing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exemption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축소**
BC80 In the light of the observations summarised in paragraph BC79, the Board decided to narrow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exemption so that it does not apply to transactions that, on initial recognition, give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BC80 문단 BC79에 요약된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BC81 The Board considered how this narrower scope of the recognition exemption would apply when an entity does not recognise a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of the same amount for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Specifically, an entity could recognise a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of different amounts if it is unable to recognise the deferred tax asset in full (see paragraphs BC82 – BC87), or if different tax rates apply to the measurement of each temporary difference (see paragraph BC88).	BC81 IASB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때, 이 축소된 적용범위의 인식 예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연법인세 자산을 전부 인식할 수는 없거나(문단 BC82~BC87 참조), 각 일시적차이의 측정치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문단 BC88 참조) 서로 다른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Inability to recognise deferred tax assets	**인식 불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BC82 Paragraph 24 of IAS 12 requires an entity to recognise deferred tax assets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probable that taxable profit will be available against which the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 can be utilised' (the recoverability requirement). Because of the recoverability requirement, sometimes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might	BC82 IAS 12 문단 24에서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이하 '회수 가능성 요건'이라 한다). 회수 가능성 요건 때문에, 때로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금액이 동일함에도,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result in an entity recognising unequal amounts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BC83 To address this situation, when it exposed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Board proposed that the recognition exemption continue to apply to the extent that an entity would otherwise recognise unequal amounts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capping proposal). Applying the capping proposal, an entity would recognise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same amount and only to the extent that, applying the recoverability requirement, the entity would recognise a deferred tax asset.	BC8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IASB는 외부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공개하였을 때,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생길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차액에는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이하 '상한 제안'이라 한다). 이러한 상한 제안을 적용하면,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것이고 회수가능성 요건을 적용하여 그 범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이다.
BC84 Feedback on the draft amendments indicated that the capping proposal would be: (a)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in IAS 12 because the Standard generally requires an entity to recognise a deferred tax liability for all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and (b) complex and burdensome to apply.	BC84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 (1) 상한 제안은 IAS 12의 원칙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준서에서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2) 상한 제안은 적용하기가 복잡하고 힘들 것이다.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BC85 In response to this feedback, the Board removed the capping proposal. The Board concluded that:	BC85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상한 제안을 삭제하였고,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a) applying the recognition exemption to a deferred tax liability only because an entity is unable to recognise a corresponding deferred tax asset applying the recoverability requirement would be inconsistent with how the recognition exemption is applied in other situations.	(1) 회수 가능성 요건이 적용되어 대응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연법인세부채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 removing the capping proposal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complexity of applying the amendments while still achieving their objective (see BC92(a)). In particular, by removing the capping proposal, the Board would:	(2) 상한 제안을 삭제하면 개정 목적을 이루면서도 그 적용의 복잡성을 유의적으로 줄일 것이다(BC92(1) 참조). 특히 상한 제안을 삭제함으로써,
(i) not require an entity to assess the recoverability requirement on initial recognition of each applicable transaction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a deferred tax liability can be recognised.	(가) IASB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각 거래의 최초 인식시점에 회수가능성 요건을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ii) simplify the accounting when, on initial recognition, deferred tax assets are not recognised in full. In such cases, had the capping proposal been retained in the amendments, entities would have been required to track separately the portions of temporary differences to which the recognition exemption was applied.	㈏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전부 인식하지는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단순화할 것이다. 개정내용에 상한 제안이 유지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적차이의 부분을 별도로 추적해야 했을 것이다.
BC86 Removing the capping proposal might result in an entity recognising unequal amounts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on initial recognition of a transaction. In such cases, an entity would recognise any difference in profit or loss (see paragraph 22(b) of IAS 12). For example, an entity would recognise an income tax loss if, on initial recognition, it recognises a deferred tax liability but is unable to recognise an equal and offsetting deferred tax asset. The Board concluded that this accounting appropriately reflects the entity's expectation that it will be unable to benefit fully from the tax deductions	BC86 상한 제안을 삭제하면 거래의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IAS 12 문단 22⑵ 참조). 예를 들면,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만, 이와 금액이 동일하고 상계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면 법인세손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IASB는 이 회계처리가 부채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무상 공제에서 효익을 완전하게 얻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기업이 자산을 회수할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available when it settles the liability, but that it is nonetheless required to make future tax payments as it recovers the asset. As explained in paragraph BC85(a), applying the recognition exemption to the deferred tax liability only because an entity is unable to recognise a corresponding deferred tax asset would be inconsistent with how the recognition exemption is applied in other situations.	때 미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업의 예상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85(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응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연법인세부채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87 Further, the Board expects that unequal amounts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would arise on initial recognition only infrequently, because an entity might often meet the recoverability requirement through the future reversal of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arising from the same transaction.	BC87 더욱이, IASB는 같은 거래에서 생기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미래 소멸을 통하여 회수가능성 요건을 보통 충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초인식시점에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한다.
Different tax rates apply	**다른 세율의 적용**
BC88 An entity might recognise a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of different amounts for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if different tax rates apply to the measurement of the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As	BC88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측정치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수도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noted in paragraph BC86, an entity would recognise any difference in profit or loss.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expected benefits of applying the recognition exemption in these situations would not outweigh the costs because:	있다. 문단 BC86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a) applying the recognition exemption in these situations would be complex because the recognition exemption would apply to only a small portion of the resulting deferred tax; and	(1) 이연법인세의 적은 일부에만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복잡할 것이다.
(b) these situations are expected to arise only in a limited number of jurisdictions and the net effect of applying different tax rates will often be immaterial.	(2) 이러한 상황은 제한된 수의 국가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세율을 적용할 때 생기는 순효과는 보통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Other considerations	**그 밖의 고려사항**
Attribution of tax deductions to the lease asset or lease liability	**리스자산 또는 리스부채에 대한 세무상 공제의 귀속**
BC89 Some respondents to the draft amendments suggested that the Board provide application guidance to help entities assess whether tax deductions	BC89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를 평가하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are attributable to the lease asset or lease liability (see paragraph BC74). The Board decided not to provide such application guidance because the expected benefits of doing so would not outweigh the costs. The Board concluded that providing such guidance:	는 데 도움을 주는 적용지침을 IASB가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였다(문단 BC74 참조). IASB는 그러한 적용지침의 예상 효익이 원가보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적용지침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a) was un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amendments—the amendments will result in entities recognising deferred tax for temporary differences that arise on leases (either on initial recognition or subsequently) regardless of whether tax deductions are attributable to the lease asset or lease liability; and	(1) 개정 목적을 이루는 데 불필요하다.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리스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최초 인식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b) could cause unintended consequences—any such guidance could affect how entities, in other situations, consider the applicable tax laws in determining the tax base of assets and liabilities.	(2)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지침은 다른 상황에서 자산 및 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dvance lease payments and initial direct costs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BC90 Applying IFRS 16, an entity initially measures a lease liability at the present value of the lease payments not paid at the commencement date. An entity's initial measurement of a lease asset includes the initial measurement of the lease liability as well as advance lease payments and initial direct costs.	BC90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처음 측정한다. 리스자산의 최초 측정치에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뿐만 아니라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도 포함된다.
BC91 The recognition of the lease liability and the related component of the lease asset's cost may give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as explained in paragraph BC79. The amendments apply to any such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that arise. In addition, making advance lease payments or paying initial direct costs could result in additional taxable temporary differences associated with the lease asset, to which an entity would appl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IAS 12. In response to requests to do so, the Board included an example illustrating the accounting for deferred tax on advance lease payments and initial direct costs.	BC91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를 인식하면 문단 BC7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그렇게 생기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적용된다. 또한, 선급리스료나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하면 리스자산과 관련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추가로 생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한 일시적차이에는 IAS 12의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사례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대응하여 IASB는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사례를 포함하였다.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Effect analysis	**영향 분석**
BC92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amendments outweigh the costs because: (a) the amendments will reduce diversity in the reporting of transactions such as leases and decommissioning obligations and align the accounting for deferred tax on such transactions with the general principle in IAS 12 of recognising deferred tax for temporary differences; and (b) concerns about the costs of applying the draft amendments related mainly to the application of the capping proposal (see paragraph BC84(b)). The Board's decision to remove the capping proposal addressed most of those concerns.	BC92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1) 개정 내용은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와 같은 거래의 보고 다양성을 줄이고, 그러한 거래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IAS 12의 일반 원칙과 일치시킬 것이다. (2) 개정 공개초안의 적용원가에 대한 우려는 주로 상한 제안의 적용과 관련되었다(문단 BC84(2) 참조). IASB는 상한 제안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그러한 우려를 대부분 해소하였다.
Transition	**경과 규정**
BC93 The Board decided not to requir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in accordance with IAS 8. Instead, it decided to require entities to apply the	BC93 IASB는 IAS 8에 따라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 및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amendments for the first time by recognising deferred tax for all temporary differences related to leases and decommissioning obliga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earliest comparative period presented. It concluded that these requirements appropriately balance expected benefits and costs. Retrospective application would require entities to retrospectively assess whether each lease and decommissioning obligation gave rise to equal taxable and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on initial recognition, which could have occurred a long time ago. The Board concluded that its transition approach would, therefore, make the amendments easier and less costly to apply than a full retrospective approach, while still achieving their objective. Such an approach also prevents any uncertainty about how the amendments interact with the transition requirements in IFRS 16.	사후처리 의무에 관련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예상되는 효익과 원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다고 결론 내렸다. 소급 적용하면 오래 전에 생겼던 각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했는지를 소급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이러한 경과 규정의 접근법이 개정 목적을 이루면서도 완전 소급법보다 적용하기에 쉽고 원가도 적게 들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접근법은 개정 내용이 IFRS 16의 경과 규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막는다.
BC94 The Board also required entities to apply the amendments prospectively to transactions	BC94 IASB는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 외의 거래(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other than leases and decommissioning obligations (that is, to such transactions that occur on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earliest comparative period presented). Were the amendments to be applied retrospectively, determining whether such transactions are in the scope of the amendments and then reconsidering the accounting for those transactions could be costly and complex.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costs of requiring entities to apply the amendments retrospectively for those other transactions would outweigh the benefits of doing so.	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에도 이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면, 그러한 거래가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해당 거래의 회계처리를 다시 검토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들고 복잡할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다른 거래에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원가가 그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BC95 For reasons similar to those explained in paragraph BC93, the Board required first-time adopters to recognise deferred tax for all temporary differences associated with leases and decommissioning obligations existing at the date of transition to IFRSs.	BC95 문단 BC93에서 설명하는 바와 비슷한 이유로, IASB는 최초 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에 관련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 붙임 1 >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